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4034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구합32558 판결

변 론 종 결 2015. 9. 16.

판 결 선 고 2015. 10. 7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3. 7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재산세 409,659,090원, 지역자원시설세 221,256,580원, 지방교육세 52,520,390원의 각 부과처분, 2014. 7. 8.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재산세 466,653,420원, 지역자원시설세 333,196,910원, 지방교육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6

59,827,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제1심 판결 8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【이러한 사정들에다가,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위 매매계약 등에 따라 2013. 1. 30.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5. 5. 28.에 이르러서야 그 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는데, 이는 인천광역시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인천광역시라고 봄이 타당하다.】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안철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1-16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